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7

2012.03.28.제정 2019.07.16.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사무처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물품구매, 제작, 수리 및 시설 공사의 발주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구매"라 함은 물품구입과 시설공사 발주를 총칭한다.
 - 2. "물품"이라 함은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각종 인쇄물, 용역 등 내·외자로 구매하는 제품을 총칭한다.
 - 3. "시설공사"라 함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보수공사를 총칭한다.
 - 4.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 시설공사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추산한 가격을 말한다.
 - 5.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본 규정 제7조 제2항에 의거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6. "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공사 발주행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담당부서) 본교에서 행하는 모든 구매행위는 사무처 구매, 시설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다액구매위원회) <삭제 2019.07.16.>
- 제5조의2(임기) <삭제 2019.07.16.>

제 2 장 예정가격

제 6 조(예정가격의 비치)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7

- 제 7 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추정가격이 물품 5,000만원, 시설공사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미리 가격조서를 작성하여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장의 가격 사정을 받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처장이 전결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2.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개정 2019.07.16.>
 - 3. 계약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신품 개발 중이거나 특수 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 5. 시설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 총장이 인정한 가격

제 3 장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 제 8 조(구매절차) ① 물품의 구매절차는 해당 사용부서에서 구매신청서에 품명, 규격, 수량, 용도, 납기를 명기(필요시 시방서, 카탈로그, 견본 등 참고자료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공사의 발주절차는 구매신청서에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구매요청 건에 대한 적절한 구매방법을 선택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제 9 조(계약방법) ① 추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의 물품과 8,000만원 미만의 시설공사는 복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한다.
 - ②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상의 물품과 8,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으며, 제1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 ③ 물품 및 시설공사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요청 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 ④ 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처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제안서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7

제10조(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조달시간을 단축하고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요청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결 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특허품, 실용실안 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구입하는 경우
 -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 4.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 5.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 6. 재입찰에 붙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7. 긴급을 요하는 계약
 - 8.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경쟁에 붙일 때 정한 조건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 9. 제 9 조 제 3항의 위원회에서 수의계약키로 결정된 경우
 - 10. 특성상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거나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 ②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규정에 준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 ③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제1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학교홈페이지 등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입찰참가신청마감 및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4. 현장설명의 장소와 일시(설명이 필요한 입찰의 경우에 한한다)
 - 5.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및 장소, 그 귀속에 관한 사항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7

- 6. 입찰방법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8.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 기간 및 이의 현장설명 기간은 본교가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가장 유리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 제14조(입찰방법) ① 제 9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을 시행코자 할 때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본교가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케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 또는 개찰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시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일 이상
 - 2. 추정가격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 6일 이상
 - 3. 추정가격이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 4. 추정가격이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5.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 ④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본교 소정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다.
 - ⑤ 입찰응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서
 - 2. 자격증명 서류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가 요구한 서류
 - ⑥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와 제한 사항
 -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다.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 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 실적
 - 라.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 능력
 - 마.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 바.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쟁 참가자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7

의 재무 상태

- 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가. 구매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 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⑦ 지명경쟁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 수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입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입찰 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16조(낙찰자 결정)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기획예산팀장의 입회하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7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또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의 부족이 판명된 입찰
 - 3.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5. 입찰사항 중 금액 등 주요 기재사항이 불분명하여 판정하기 곤란한 입찰
 - 6. 기타 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에 위배한 입찰
- 제18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의시담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여부와 회수 및 시기는 입찰 품목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9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소정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7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쌍방이 계약서에 간인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④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사본을 검수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견적서, 협정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계약금액이 물품 및 시설공사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 제2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② 계약보증금 납부는 현금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선금의 지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경비를 선지 급할 수 있다.
- 제23조(검수) 납품된 물품 또는 완성된 시설공사는 본교 물품검수규정 및 공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받지 않은 물품 및 시설물은 입고 또는 사용할 수없다.
- 제24조(대가의 지급) 물품 또는 시설공사 등의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소정의 검수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2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제2항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공사 : 1,000분의 1 이상/1일
 - 2.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이상/1일



문서번호	BSKS-3-1-65
제정일자	2012.03.28.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7/7

제 6 장 보 칙

제2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 ,『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